

# 예 산 총 칙

202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81,137,646	26,434,129
일반회계	746,139,277	22,384,178
특별회계	134,998,369	4,049,951
공기업특별회계	111,808,570	3,354,25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346,706	700,40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8,461,864	2,653,856
기타특별회계	23,189,799	695,69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71,652	38,1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5,720	23,872
주차장특별회계	5,351,703	160,551
수질개선특별회계	15,770,724	473,12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778,83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특정목적 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 보고한다.